

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
본인확인 및 인감대조	담당	책임자	관리자	부점장

추 가 약 정 서

(이차보전자금대출용)

주식회사 하나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 무 자 (인)

주 소

연대보증인 (인)

주 소

담보제공자 (인)

주 소

본인은 은행과 약정한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1조(이차보전자금대출)

본인이 신청한 대출은 하나은행과 ()와(과) 협약한 이차보전자금대출로서, 협약기관인 ()에서 정한 제 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.

지원자금명		이차보전대상 여신(한도)금액	금	원
이차보전율	%	이차보전 대상기간		

제2조(대출금리의 정의)

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상의 이자율은 본 추가약정서 제 1조의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이자율임을 확인합니다.

제3조(대출기간중의 금리 변경)

- 협약기관에 의해 대출기간, 대출금리(이차보전율 포함) 등 대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출금 만기일 전이라도, 변경된 대출기간 및 대출금리 등의 조건에 따를 것을 약정합니다.
- 협약기관에서 정한 이차보전 지원중단 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해당 이차보전율만큼 부담금리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.

제4조(기타)

- 본 대출은 협약에 따라 사업자관련 정보 대출관련정보를 협약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, 협약기관이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- 이차보전지원 중단사유가 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상의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본인은 이 추가약정서상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.

본 인

(인)